

2013학년도 제5차 <제308차 이사회 회의록>

2013. 10. 11.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3학년도 제5차

<제30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9 인	2 인

1. 일 시 : 2013.10.11(금) 07:30 ~ 10:20 (회의소집 통보일 : 2013년 10월 2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안재환,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홍, 김선용 (9인)
- 감사 : 전성훈, 배홍기 (2인)

◎ 결석임원

- 이사 : 윤성복, 신희택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소의영, 기획처장 김민구,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3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사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아홉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사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4/2/13

이사

이영현

(김민구 기획처장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전성훈 감사가 2013학년도 교비회계 예비비 사용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한 성격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08차 이사회 심의 안건은 학법대우 제13-211호(2013.10.02)로 통보한 내용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 제1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제2호 아주대학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3호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개정(안), 제4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제5호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제6호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7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제8호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멸실 처분 및 권역외상센터 증축 승인(안), 제9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제10호 2013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47억원 포괄계약 승인(안), 제11호 권역외상센터 국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 제12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제13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제14호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승인(안), 제15호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및 장례식장(수익용 건물) 신축 승인(안) 등 15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96조 정원의 별표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직원 명예퇴직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정관 제84조 제2항, 제3항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직원 정원 조정(안)은 권역외상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 임상교원 증원 및 진료확대를 위한 증원 330명과 기능직Ⅱ 정원 축소에 따른 감원 30명을 반영하여 의료원 최종 정원을 2,72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장기승진누락자 및 무보직 상위직급자로 인한 인사적체를 해소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2 -
이 사 이 영 현

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정관에 관련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직원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수입·지출의 변동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대부분이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따른 직원 정원 조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권역외상센터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0년 정도에는 10억원 정도의 순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증가되는 환자 및 이로 인해 가동되는 부가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활용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주 인 육 :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지만, 순수 외상센터 자체만의 운영을 놓고 손익을 판단한다면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서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권역외상센터 운영의 장점을 부연설명 드리자면, 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통해 지원되는 국비 및 도비를 활용함으로써 한계에 부딪혔던 외적 규모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배홍기 : 지난 이사회 보고사항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체적인 의료원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300명의 증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수익 감소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아시다시피 의료사업이 사람이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중환자실 40Bed, 일반병실 60Bed 등이 운영될 예정인데, 정원 조정 내용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정원은 권역외상센터 전체가 완전히 가동되었을 때의 최대 인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매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영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잘 조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박상일 : 두 번째 사안인 직원 명예퇴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 시기에 있어서 이를테면 학교나 법인에서 적정한 시점을 정하는 것에 대해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좀 더 정확히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정 규정의 원(안)대로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곧바로 명예퇴직을 실행할 경우 결국 예비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 운영차원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3/21 이사 이영현

서도, 제도 운영 자체에 있어서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법인에서 별도로 직원명예퇴직 신청시점을 정하여 제도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올해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내년 정도에 예산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상일 : 직원 명예퇴직자가 결정되면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분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때와 비교해서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퇴직까지 5년 남은 4급 정도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신규 대체를 감안하더라도 약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 최홍 : 인력에 대해 신규 대체를 하면 재정 면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이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조직 순환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사장 :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를 시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 않을 것 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일단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안 제2호 및 제6호가 직원 명예퇴직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에 관한 안전이므로 이어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최홍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4조 (신분보장)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84조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직원이 자진하여 그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간석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4-

안재환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신 설>		③ 제2항의 명예퇴직 요건,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직 원 정 원		<별표> 직 원 정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기관</th> <th>의료원</th> </tr> <tr> <th>직군</th> <th>직급</th> <th></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총 계</td><td>2,420명</td></tr> <tr> <td rowspan="8">일반직</td><td>소계</td><td>200명</td></tr> <tr> <td>2급</td><td>1명</td></tr> <tr> <td>3급</td><td>4명</td></tr> <tr> <td>4급</td><td>16명</td></tr> <tr> <td>5급</td><td>30명</td></tr> <tr> <td>6급</td><td><u>73명</u></td></tr> <tr> <td>7급</td><td>58명</td></tr> <tr> <td>8급</td><td>18명</td></tr> <tr> <td rowspan="8">기술직</td><td>소계</td><td><u>1,555명</u></td></tr> <tr> <td>2급</td><td>1명</td></tr> <tr> <td>3급</td><td>3명</td></tr> <tr> <td>4급</td><td>24명</td></tr> <tr> <td>5급</td><td>110명</td></tr> <tr> <td>6급</td><td><u>420명</u></td></tr> <tr> <td>7급</td><td>715명</td></tr> <tr> <td>8급</td><td>282명</td></tr> <tr> <td rowspan="8">기능직 I</td><td>소계</td><td>35명</td></tr> <tr> <td>6등급</td><td>14명</td></tr> <tr> <td>7등급</td><td>12명</td></tr> <tr> <td>8등급</td><td>4명</td></tr> <tr> <td>9등급</td><td><u>5명</u></td></tr> <tr> <td>소계</td><td><u>165명</u></td></tr> <tr> <td>7등급</td><td><u>147명</u></td></tr> <tr> <td>8등급</td><td><u>8명</u></td></tr> <tr> <td rowspan="8">기능직 II</td><td>9등급</td><td><u>10명</u></td></tr> <tr> <td>소계</td><td>465명</td></tr> <tr> <td>2급</td><td>-</td></tr> <tr> <td>3급</td><td>-</td></tr> <tr> <td>4급</td><td>-</td></tr> <tr> <td>5급</td><td>120명</td></tr> <tr> <td>6급</td><td>345명</td></tr> <tr> <td>7급</td><td>-</td></tr> <tr> <td rowspan="8">별정직</td><td>8급</td><td>-</td></tr> <tr> <td>소계</td><td><u>1,885명</u></td></tr> <tr> <td>2급</td><td>1명</td></tr> <tr> <td>3급</td><td>3명</td></tr> <tr> <td>4급</td><td>24명</td></tr> <tr> <td>5급</td><td>110명</td></tr> <tr> <td>6급</td><td><u>581명</u></td></tr> <tr> <td>7급</td><td>742명</td></tr> <tr> <td rowspan="8">기능직 I</td><td>8급</td><td><u>424명</u></td></tr> <tr> <td>소계</td><td>35명</td></tr> <tr> <td>6등급</td><td><u>17명</u></td></tr> <tr> <td>7등급</td><td><u>14명</u></td></tr> <tr> <td>8등급</td><td>4명</td></tr> <tr> <td>9등급</td><td><u>0명</u></td></tr> <tr> <td>소계</td><td><u>135명</u></td></tr> <tr> <td>7등급</td><td><u>128명</u></td></tr> <tr> <td rowspan="8">기능직 II</td><td>8등급</td><td><u>6명</u></td></tr> <tr> <td>9등급</td><td><u>1명</u></td></tr> <tr> <td>소계</td><td>465명</td></tr> <tr> <td>2급</td><td>-</td></tr> <tr> <td>3급</td><td>-</td></tr> <tr> <td>4급</td><td>-</td></tr> <tr> <td>5급</td><td>120명</td></tr> <tr> <td>6급</td><td>345명</td></tr> <tr> <td rowspan="2">별정직</td><td>7급</td><td>-</td></tr> <tr> <td>8급</td><td>-</td></tr> </tbody> </table>		기관		의료원	직군	직급		총 계		2,420명	일반직	소계	200명	2급	1명	3급	4명	4급	16명	5급	30명	6급	<u>73명</u>	7급	58명	8급	18명	기술직	소계	<u>1,555명</u>	2급	1명	3급	3명	4급	24명	5급	110명	6급	<u>420명</u>	7급	715명	8급	282명	기능직 I	소계	35명	6등급	14명	7등급	12명	8등급	4명	9등급	<u>5명</u>	소계	<u>165명</u>	7등급	<u>147명</u>	8등급	<u>8명</u>	기능직 II	9등급	<u>10명</u>	소계	465명	2급	-	3급	-	4급	-	5급	120명	6급	345명	7급	-	별정직	8급	-	소계	<u>1,885명</u>	2급	1명	3급	3명	4급	24명	5급	110명	6급	<u>581명</u>	7급	742명	기능직 I	8급	<u>424명</u>	소계	35명	6등급	<u>17명</u>	7등급	<u>14명</u>	8등급	4명	9등급	<u>0명</u>	소계	<u>135명</u>	7등급	<u>128명</u>	기능직 II	8등급	<u>6명</u>	9등급	<u>1명</u>	소계	465명	2급	-	3급	-	4급	-	5급	120명	6급	345명	별정직	7급	-	8급	-
기관		의료원																																																																																																																																				
직군	직급																																																																																																																																					
총 계		2,420명																																																																																																																																				
일반직	소계	200명																																																																																																																																				
	2급	1명																																																																																																																																				
	3급	4명																																																																																																																																				
	4급	16명																																																																																																																																				
	5급	30명																																																																																																																																				
	6급	<u>73명</u>																																																																																																																																				
	7급	58명																																																																																																																																				
	8급	18명																																																																																																																																				
기술직	소계	<u>1,555명</u>																																																																																																																																				
	2급	1명																																																																																																																																				
	3급	3명																																																																																																																																				
	4급	24명																																																																																																																																				
	5급	110명																																																																																																																																				
	6급	<u>420명</u>																																																																																																																																				
	7급	715명																																																																																																																																				
	8급	282명																																																																																																																																				
기능직 I	소계	35명																																																																																																																																				
	6등급	14명																																																																																																																																				
	7등급	12명																																																																																																																																				
	8등급	4명																																																																																																																																				
	9등급	<u>5명</u>																																																																																																																																				
	소계	<u>165명</u>																																																																																																																																				
	7등급	<u>147명</u>																																																																																																																																				
	8등급	<u>8명</u>																																																																																																																																				
기능직 II	9등급	<u>10명</u>																																																																																																																																				
	소계	465명																																																																																																																																				
	2급	-																																																																																																																																				
	3급	-																																																																																																																																				
	4급	-																																																																																																																																				
	5급	120명																																																																																																																																				
	6급	345명																																																																																																																																				
	7급	-																																																																																																																																				
별정직	8급	-																																																																																																																																				
	소계	<u>1,885명</u>																																																																																																																																				
	2급	1명																																																																																																																																				
	3급	3명																																																																																																																																				
	4급	24명																																																																																																																																				
	5급	110명																																																																																																																																				
	6급	<u>581명</u>																																																																																																																																				
	7급	742명																																																																																																																																				
기능직 I	8급	<u>424명</u>																																																																																																																																				
	소계	35명																																																																																																																																				
	6등급	<u>17명</u>																																																																																																																																				
	7등급	<u>14명</u>																																																																																																																																				
	8등급	4명																																																																																																																																				
	9등급	<u>0명</u>																																																																																																																																				
	소계	<u>135명</u>																																																																																																																																				
	7등급	<u>128명</u>																																																																																																																																				
기능직 II	8등급	<u>6명</u>																																																																																																																																				
	9등급	<u>1명</u>																																																																																																																																				
	소계	465명																																																																																																																																				
	2급	-																																																																																																																																				
	3급	-																																																																																																																																				
	4급	-																																																																																																																																				
	5급	120명																																																																																																																																				
	6급	345명																																																																																																																																				
별정직	7급	-																																																																																																																																				
	8급	-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사
- 5 -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u>부 칙</u> <u>(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2 호 아주대학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앞서 가결된 직원 명예퇴직 관련 개정 정관에 근거하여 아주대학교 본교의 직원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직원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통해 장 기승진누락자 및 무보직 상위직급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신규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정원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됨으로써 인사효율성 및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명예퇴직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일 기준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인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 직원명예퇴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퇴직수당 지급액 및 관련 절차, 소요예산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원(안) 제2조 명예퇴직의 요건에 있어서 별도의 신청과정이나 결정절차 없이 주어진 요건만 갖추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명예퇴직 요건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자는 제4조의 공고에 따라 제5조, 제6조의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하여 요건을 보다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에 ‘명예퇴직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명예퇴직이 승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지급에 관해 규정한 제3조 내용에 ‘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5조 제3항 각 호 심사 고려사유로 옮겨 심사 단계인 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한재현

이사 이영현

‘예산 범위’라는 의미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수정하여 문구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찬가지 제3조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해 ‘명예퇴직 직원’이란 표현 보다는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4조 제3항 명예퇴직 예정 일을 ‘학기말’로 했는데, 교원이라면 모르지만 굳이 직원도 학기말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월말’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떠신지, 어느 쪽이든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보통 직원들도 학기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중간에 직원의 공백이 생기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학기말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감안하여 명예퇴직 규모를 정한 후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공고한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 박상일 : 그 부분도 지금 원(안) 제4조 제2항을 보면 신청기간만 공고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이것은 단순한 신청기간이 아니고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명예퇴직 요건을 보완하긴 하였습니다만, 명예퇴직 신청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요건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 측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자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면서 해당 직원은 명예퇴직 주장에 따라 퇴직수당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학교 측에서는 해고로 대응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 :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원(안) 제2조 제1항에 덧붙여 ‘명예퇴직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한다.’라고 수정하여 명예퇴직 요건을 보다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원(안) 제3조 제1항 ‘명예퇴직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라고 수정하고, 해당 조항에서 삭제된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제5조 제3항 각호에 ‘6. 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수정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4조 제2항의 신청기간 다음에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고시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원(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지환

이사

이영현

이사 박상일 :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수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제2조 제1항 후단에 ‘명예퇴직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한다.’를 추가하고, 원(안) 제3조 제1항 ‘명예퇴직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라고 변경하며, 제4조 제2항 ‘제1항의 신청기간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를 ‘제1항의 신청기간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로 변경하며, 제5조 제3항 각호 중 ‘6.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직원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2013. 10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 요건) ①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0년 이내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①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 삭제)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정년 잔여월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정년퇴직일 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임금기준액 × 정년잔여월수 × 5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8-
자화

이사 이영현

2. 정년퇴직일 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임금기준액 × 60개월 × 50%)

③ 제2항의 임금기준액이라 함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 1개월분의 기본급, 급량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신청기간 내에 별표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기간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의 심사)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원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향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상 또는 질병의 유무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소속 부서에서의 업무

6. 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

7. 기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6조 (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총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 여부가 결정되면 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은 명예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호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개정(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2024.2.15

이사 이경현

상임이사 이영현 :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제2조에 의거 이사장이 되며 다만 교육용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정 제2항 각호에 대하여는 시행 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장 승인사항 중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최홍 :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시행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하 “교육용 재산”이라 한다)은 당해학교의 장이 관리보존한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삭제>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량, 보일러 등의 철거·매각에 관한 사항5. <삭제>6. <u>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u>7. 가건물 설·폐에 관한 사항	<p>제2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하 “교육용 재산”이라 한다)은 당해학교의 장이 관리보존한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삭제>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량, 보일러 등의 철거·매각에 관한 사항5. <삭제>6. <u>교육용 재산의 임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u>7. 가건물 설·폐에 관한 사항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 죄 | 환
- 10 -

이사 이 | 영 | 현

현 행	개 정
8. 기타 이사장이 법인 관리·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법인 관리·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부 칙</u> <u>(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4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건산업기술(의약, 식품, 향장, 약료서비스)의 혁신성 향상과 기업의 해외진출, 기술획득을 위한 전문 인력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충족할 약학, 임상, 의학, 경영, 법학, 기초과학 등 다학제 간 융합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주대학교와 보건산업 기업체간의 산학협력 시너지 창출을 통한 대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직제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 특수대학원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 및 교육과정 편성 등 세부운영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전성훈 : 특수대학원 명칭이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인데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해외강사진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해외현장에 파견해서 제휴를 한다는 것인지, 단순하게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표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교무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다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신상협 :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 11 -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및 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기초교육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대외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어학교육원 2. 연구처장 :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박물관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종합인력개발원,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4. 법학전문대학원장 : 법학전문도서관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기초교육대학 : 의사소통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5. 교무처 : 아주서비스센터, 교직부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p>④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경현
- 12 -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6. 연구처 : 공동기기센터</p> <p>7. 학생처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p> <p>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9. 대외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p> <p>10.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2. 종합인력개발원 :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p> <p>13.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및 비서실을 둔다.</p> <p>⑨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u>부 칙</u> <u>(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5 호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기능직I에 대한 승진직급 제한 해결안으로 기능직I 6등급인 자가 현장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직급에서 5년, 10년, 15년 이상을 근속한 경우 시설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보수규정 제11조(특수근무수당)의 ‘시설관리자수당’을 ‘시설관리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수당지급에 대해 예산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 규정 적용시 지급금액이 최대 1천만원 내외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석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기환
- 13 -

이사 이영현

이사문길주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박상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특수근무수당) ① 직원이 기술 및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정필수요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직원이 기능직의 직종별 책임자인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시설관리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교원이 출제, 채점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직원이 감독 등의 시험 진행업무에 종사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p>	<p>제11조(특수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직원이 기능직에 종사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시설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1조 제2항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p>

<별표2> 2013학년도 정규직원 제수당 지급기준표

현 행				개 정				
수당명	내 용	지급액	지급방법	수당명	내 용	지급액	지급방법	
특수 근무 수당	시설 관리자 수당	80천원/월	매월	특수 근무 수당	시설 관리 수당 (전기 ·기계 ·설비)	기능직I 6등급 근속 5년이상 ~ 10년 미만	80천원/월	매월
						기능직I 6등급 근속 10년이상 ~ 15년 미만	130천원/월	매월
						기능직I 6등급 근속 15년이상	180천원/월	매월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14-

이사 이영현

- 시설관리자수당은 정관 정원표상 기능직 파트별 별도기준에 의거 지급함(2013.3월까지)
- 시설관리수당은 기능직I 6등급 종사자가 현장에서 기술업무(전기·기계·설비)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함(2013.4월부터 적용하며, 보수규정 개정 후 지급함)

제 6 호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안 제1호 개정 정관에 근거하여 의료원에서 직원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에서도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합리화 차원의 무보직 고직급자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의료원의 장기적 성장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승진 기대감 향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조기퇴직에 따른 적정한 보상으로 합리적 명예퇴직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교와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은 정규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0년 이내인 자이나, 특이사항으로 의료원 개원 20주년(2014.8.31)전까지는 19년 이상 근속한 직원도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시켜 한시적으로 대상을 좀더 넓게 하였습니다. 퇴직수당 지급액 및 관련 절차, 소요예산 등은 본교와 유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면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채 홍 : 의료원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면 일반 회사들처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관에서 필요한 주요인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의료원에서는 신청자가 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대개 결혼도 했고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주요인력과 관련해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 전부가 명예퇴직자가 될 수 없으며, 그 규모나 대상 등의 기준을 두고 직원명예퇴직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여 우려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직원 명예퇴직제도는 개정 정관에 근거하여 본교와 의료원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의안 제2호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해 본 의안인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채 홍

이 사 · 양 현

료원의 경우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외에 수정(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육 :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수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제2조 제1항 후단에 ‘명예퇴직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한다.’를 추가하고, 원(안) 제3조 제1항 ‘명예퇴직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라고 변경하며, 제5조 제3항 각호 중 ‘6.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의료원 직원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2013. 10.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84조 제3항에 규정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직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 요건) ① 의료원에서 정규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0년 이내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이 결정된 자에 한한다.

②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37조의3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한 자의 근속기간은 의료원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③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①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 삭제) 명예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정년 잔여월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2/16

이사 이영현

1. 정년퇴직일 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임금기준액 × 정년잔여월수 × 50%)
2. 정년퇴직일 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
(임금기준액 × 60개월 × 50%)
- ③ 제2항의 임금기준액이라 함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 기본급 및 상여금의 2개월 평균액, 급량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정년잔여월수 산정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퇴직의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표에 의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장은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 (명예퇴직의 심사)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원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을 거쳐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상 또는 질병의 유무
2. 근속년수
3. 직급 및 직위
4. 연령
5. 소속 부서에서의 업무
6. 명예퇴직에 이용 가능한 예산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6조 (명예퇴직의 결정) ① 명예퇴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의료원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 여부가 결정되면 의료원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퇴직이 결정된 직원은 명예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퇴직 요건의 예외) 제2조 제1항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개원 20주년(2014.8.31) 전까지는 19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제 7 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의 배경으로는 국책연구 수주 활성화, 연구역량 및 교육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을 보강하고, 정부 주요사업 수주 및 제도 변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직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의료원 의사결정 회의체(의료원 운영회의)를 규정에 명시하고, 의료원 연구진흥 기능 및 산학연 협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지원실장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적된 뇌과학 분야의 지식을 활성화하여 뇌과학 발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뇌과학과를 신설하고,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따라 중증외상특성화센터 명칭을 권역외상센터로 바꾸고 편제를 병원장 직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에 대한 자세한 변경사항은 회의자료 8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문길주 :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u>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u> 제92조 제5항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기본 행정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u>「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u> 제92조 제5항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기본 행정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의료원의 <u>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u>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의료원의 <u>직제는 「정관」에 특별히</u>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18 -

이 사 이 영 현

현 행	개 정
<신 설>	<p><u>제7조의 2 (의료원 운영회의)</u> ①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원 운영회의를 두며, 의료원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연구지원실장과 의료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료원 운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8조 (제 위원회) ① <u>의료원의 진료, 교육 및 관리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료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u> 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p>제8조(제 위원회) ① <u>의료원장은 교육, 연구, 진료 및 관리상의 주요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u> 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제 5 장 연구지원실	제 5 장 연구지원실
제9조의 2 (연구지원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연구지원실을 두며, 연구지원실에는 <u>실장을</u> 둔다. ② 연구지원실장은 의료원 연구조직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u>감독한다</u> . ③ 연구지원실에는 연구지원팀을 두며, 연구지원팀에는 팀장을 둔다.	<p>제9조의 2 (연구지원실)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연구지원실을 두며, 연구지원실에는 <u>실장과 실장보를</u> 둔다.</p> <p>② 연구지원실장은 의료원 연구조직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u>감독하고 실장보는 실장을 보좌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제11조 (학과 및 각 교실) ① 의과대학에는 의학과를, 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를 둔다. ② 의학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악리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정보학과, <신설>, 소화기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 종양혈액내과학교실, 감염내과학교실,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핵의학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응급의학과교실, 직업환경의학교실, 가정의학과교실, 치과학교실, 의학유전학과를 둔다.	<p>제11조 (학과 및 각 교실)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학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악리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정보학과, <u>뇌과학</u>, 소화기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 종양혈액내과학교실, 감염내과학교실,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핵의학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응급의학과교실, 직업환경의학교실, 가정의학과교실, 치과학교실, 의학유전학과를 둔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수근

이사 이영호

현 행	개 정
<p>③ <삭 제 2012. 5. 22></p> <p>④ 보건대학원에는 보건학과를 둔다.</p> <p>⑤ 임상치의학대학원에는 임상치의학과를 둔다.</p> <p>⑥ 각 학과에는 학과장, 부학과장은, 각 교실(과)에는 주임교수 및 과장을 둔다.</p>	<p>③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제 7 장 부속병원</p> <p>제14조 (부속병원) ① 부속병원에는 원장과 제1진료부원장, 제2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을 두며,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는 지역암센터장, 내과부장, 교육수련부장을 두고 제2진료부원장 산하에는 간호부장을 둔다.</p> <p>② 원장은 부속병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통제, 조정 등 병원전반에 관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 제1진료부원장과 제2진료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제1진료부원장은 지역암센터, 내과부 각과 및 진료각과, 교육수련부를 관장하고 제2진료부원장은 진료지원부서 및 간호부를 관장한다.</p> <p>④ 행정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경리팀, 시설관리팀 및 사업운영팀을 관장한다.</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삽 입>를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 7 장 부속병원</p> <p>제14조 (부속병원)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행정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사업운영팀을 관장한다.</p> <p>⑤ 원장 직속으로 병원경영팀, 기관연구윤리심의실, 적정진료관리실,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두며, 병원경영팀에는 팀장을, 기관연구윤리심의실과 적정진료관리실에는 실장을, 건강증진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는 소장을 둔다. 다만, 적정진료관리실에는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실장과 운영팀장을, 건강증진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과 운영팀장을 둘 수 있다.</p>
<p>제15조 (진료부서) ① 진료부서에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종양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의 내과부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실,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외상</p>	<p>제15조 (진료부서) ① 진료부서에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종양혈액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의 내과부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수술실,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실,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삭 제>,</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화진

이사 이영호

현 행	개 정
<p>특성화센터, 진료협력센터, 국제진료센터, 고객상담실을 둔다.</p> <p>② 내과부 각과, 진료 각과, 각실 및 각 센터에는과장, 실장 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다만, 국제진료센터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다.</p> <p>③ 각 센터의 소장은 임상과장장을 겸직할 수 있다.</p> <p>④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사장을 둘 수 있다.</p> <p>⑤ <삭 제 2012. 5. 22></p>	<p>진료협력센터, 국제진료센터, 고객상담실을 둔다.</p> <p>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 (진료지원부서) ① 진료지원부서에는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사업팀 및 의용공학팀 <삽입>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② <삭 제 ></p>	<p>제17조 (진료지원부서) ① 진료지원부서에는 약제팀, 영양팀, 의무기록팀, 사회사업팀, 의용공학팀 및 <u>임상약학교육실</u>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두고, <u>임상약학교육실에는 실장을 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 (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산하에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경리팀, 시설관리팀 및 사업운영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20조 (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산하에 총무팀, 인사복지팀, 외래원무팀, 입원원무팀, 보험팀, 구매관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및 사업운영팀을 두며,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p>
<p>제20조의 2 (부설기관) ① <u>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u> 제9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속병원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지역진료에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p> <p>② <삭 제 ></p> <p>③ 소장은 센터에 관계된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20조의 2 (부설기관) ① 「정관」 제9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부속병원 제1진료부원장 산하에 지역진료에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에는 소장을 둔다.</p> <p>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 2 (자격 등) ①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실장보, <삽입> 각 대학의 학과장, <삽입> 주임교수, 과장 및 소장, 의과대학의 부학장 및 의학교육실장, 부속병원의 내과부장, 교육수련부장 및 과장(실장, 부실장, 소장,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p> <p>② 간호부장은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각 팀장, 기사장 및 운영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각 부서에는 필요한 경우 부서장을 보좌하는 파트장을 둘 수 있으며, 파트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제21조의 2 (자격 등) ①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실장보, <u>연구지원실의 연구지원실장보</u>, 각 대학의 학과장, <u>부학과장</u>, 주임교수, 과장 및 소장, 의과대학의 부학장 및 <u>의학교육실장</u>, 부속병원의 내과부장, 교육수련부장 및 <u>과장(실장, 부실장, 소장, 부소장)</u>은 교원으로 보한다.</p> <p>②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수 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8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멸실 처분 및 권역외상센터 증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멸실 처분 및 권역외상센터 증축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남부권의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병원동과 직접 연결되는 권역외상센터 건립 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인근 경쟁업체인 수원 연화장과는 차별화하여 경기 남부권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에 맞는 고급장례 수요 흡수를 위한 새로운 시설규모가 요구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기존의 장례식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해당 위치에 권역외상센터를 증축하고자 안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 증축을 통해 아주대병원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국비·도비 지원을 통한 진료역량을 확대시키며, 중증외상 환자 유입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장례식장 멸실 규모 및 권역외상센터 증축 시설개요, 소요예산 및 재원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육 : 병원이라는 곳은 많은 직원과 장비로 인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층별 배치도를 보면 가장 전망 좋은 지상 5층에 교수실, 회의실, 행정실, 연구센터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은 병실이 위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에 대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상은 환자 동선에 맞추고 지하는 교직원 동선으로 하여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이고 고객 중심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악화되는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건물 신축 시 지하로 깊게 파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하다면 늘어나는 주차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으리라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22 -

이 사

이 사

이 영 현

생각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좀 더 먼 미래를 대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분명 옳지만, 도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하에 대한 추가 증축은 더 큰 비용문제가 수반되는 관계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효율성을 잘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최근 본교 체육관 옆에 옥외 지상주차장을 추가 증축함으로써 다소 나아지긴 하였지만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여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결국 여러 가지가 투입되는 비용문제로 연결되는데, 권역외상센터 소요예산은 417.1억원으로 의료원 자체조달 재원과 국비, 도비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 비교적 지원이 확실한 국비 80억원에 비해 도비 200억원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시 말해 도비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권역외상센터 증축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이사회에서는 의료원에서 제시한 소요예산 417.1억원과 연면적 약 3,360평의 범위 안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증축하는 것만을 승인하고, 추후 도비 200억원 재원 조달여부에 따라 증축규모 및 내용은 축소 가능한 것으로 하여 사후에 별도로 승인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 위임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도비 재원조달 여부에 따라 증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최 흥 : 이사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증축 한도만을 승인하고, 도비 재원 조달여부에 따라 증축규모 및 내용의 변경 승인은 이사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 주인욱 :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수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다.)

이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멸실 처분 및 권역외상센터 증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장례식장 멸실 처분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증축은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요예산 417.1억원과 연면적 3,360평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되, 추후 도비 200억원 재원 조달여부에 따라 증축규모 및 내용은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승인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기환

이사 이영현

제 9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권역외상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 사업 등 국가지원사업 선정, 외부평가를 통한 위상제고(JCI 재인증 준비) 및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수입예산 실적 변동에 따른 비용절감 예산 반영으로 수입예산 목표달성과 연계한 지출계획 재수립, 재료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관리비를 배제한 긴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389,000천원 감소한 434,521,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전성훈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상반기 실적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의료수익은 본예산 4,153억원 대비 299억원($\triangle 7.2\%$) 감소되고 전년도 3,816억원 대비 38억원(1.0%) 증가한 예산(3,854억원)입니다. 병원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높고(51%) 하반기가 낮다(49%)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전년 대비 1% 증가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반기에 좀 더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전년보다 의료수익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낮고(48.1%) 하반기가 높게(51.9%) 나타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추경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작년기준으로 추정되는 의료비용이 3,854억원이 예상되어 당기순손실이 75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용 예산을 3,779억원 이하로 감소시켜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관점에서 부속병원회계의 1차 추경(안)은 의료비용을 3,755억까지 감소시켜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비용의 감소가 대부분 재료비 감소($\triangle 191$ 억)에 기인하고, 목표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재료비 감소 목표가 미달성될 경우 의료이익의 추가 감소가 예상되어 이 부분이 다소 우려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제2진료부원장이 재료비절감TFT 위원장을 맡아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상각과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매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재료비 절감에 더욱 주력해서 매년 그러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원의 체질개선과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주인욱 : 전체 교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진환
- 24 -

이사 이영희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료 수 입	385,400,000	415,260,000	-29,860,000
	의료 외 수 입	19,377,634	16,525,400	2,852,234
	기타고정부채수입	200,000	200,000	0
	차 입 금 수 입	11,700,000	7,000,000	4,700,000
	기 본 금 증 가	0	0	0
	전 기 이 월 자 금	17,843,366	14,924,600	2918766
	계	434,521,000	453,910,000	-19,389,000
지 출	의료 비 용	326,600,500	349,300,500	-22,700,000
	의료 외 비 용	10744,000	10,743,800	20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0	0	0
	기타고정부채상환	40,000	0	40,000
	차 입 금 상 환	12,250,000	12,250,000	0
	고 정 자 산	20,858,400	15,868,900	4,989,500
	전 출 금	43,261,600	41,797,600	1,464,000
	예 비 비	4,960,000	5,000,000	-40,000
	차 기 이 월 자 금	15,806,500	18,949,200	-3,142,700
	계	434,521,000	453,910,000	-19,389,000

제 10 호 2013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47억원 포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47억원 포괄계약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권역외상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신재현

이 사 이영현

센터 증축 전 리모델링에 따른 의료장비 209점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장비 도입자금을 하나캐피탈(주)와 원화리스 47억원으로 포괄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리스기간은 5년이며, 금리조건은 1년단위 변동금리 3.98%입니다. 도입 예정인 의료장비 세부현황은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욕 :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47억원 포괄계약 승인(안)을 심의 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화리스 47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 내용

구 분	계 약 조 건	비 고
리 스 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계약금액	47억원	
리스기간	5년	
납부방법	3개월 후불	
금 리	기준금리(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 0.73% = 3.98% (기준금리 : 2013.8.30 기준)	1년 단위 변동금리
리스형태	금융리스	
담보제공	무담보 신용	
종료후 처리	무상양도	

제 11 호 권역외상센터 국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

이 사 장 : 권역외상센터 국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국비지원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3년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조건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쓰니 흐름
- 26 -

이 사 이 | 예현

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권역외상센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원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은 국비지원액 80억원과 해당 연도별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상당금액입니다. 해당 연도별로 대상금액에 따라 보증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 국고보조금 전체(국비지원액 및 운영비)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포괄승인하는 형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세부현황은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권역외상센터 국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권역외상센터 국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 내용

가. 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 피보험자 : 보건복지부

나. 보험상품 : 이행(지급)보증보험 (의료기관에 지원한 보조금 반환 지급보증)

다. 보험계약자 :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병원)

라. 피보험자 : 보건복지부

마. 보증기간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간

바. 보험가입금액 : 국고보조금 상당금액 (국비지원액 80억 + 해당연도별 운영비 차등지급)

사. 이사회 승인 : 국고보조금 전체(국비지원액 및 운영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포괄승인

* 해당 연도별로 대상금액에 따라 보증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이루어지는 권역 외상센터 국고보조금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별도 이사회 승인 없이 금번 이사회 심의로 승인 된 것으로 함.

제 12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 밟의.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이 사 | 이 사 |
- 27 -

이 사

영 현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비상경영체제 돌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교원의 신규증원은 억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연구·임상강사는 현원 수준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승인받은 교원 채용계획 정원 443명과 대비하여 전임교원은 4명, 특임교원은 1명을 축소하여 총 정원을 438명으로 하며, 이에 따라 2013년 6월 현원 412명을 기준하여 총 26명 충원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정 기준별로 2013학년도 미충원 23명, 정년·사직 등에 의한 결원대체 3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문길주 : 작년도 승인된 교원 채용계획보다 정원을 줄이고 올해는 현원기준으로 충원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3 호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기계장치,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전산장비,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2,145점, 취득금액 3,586,206,794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최홍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28 -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
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4 호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승인(안)

이사장 :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교육용 기본재산인 장례식장 신축부지 용도변경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료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장례식장을 멸실하고 권역외 상센터를 증축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부지를 선정하여 장례식장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장례식장 이전 신축 재원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기채를 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부와 사전 업무협의를 하였더니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해당 장례식장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로서 사실상 수익용 시설이므로 신축 예정인 장례식장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신축부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신축된 장례식장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장례식장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산하기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박상일 : 내용에 별다른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쓰지호 이사 이영현

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용도변경 내용

1. 장례식장 신축부지 현황

(단위: 원)

소재지	구분	면적	비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토지	505평 (1,669m ²)	

2. 용도변경 : 교육용 기본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3. 용도변경 대상 토지면적 및 교비회계 보전 금액

(1) 용도변경 대상 토지면적 : 505평(1,669m²)

(2) 교비회계 보전금액 : 용도변경 대상 토지 면적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 추후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 토지면적 및 보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감정평가 금액 (2013.10월 현재)

구분	13년 감정평가액	비고
금액	692,726,300원	505평(1,669m ²) 기준

제 15 호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및 장례식장(수익용 건물) 신축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및 장례식장(수익용 건물) 신축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앞서 심의한 안건의 연결선상으로서 장례식장 신축 재원 활용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에 대한 내용과 이를 통해 대체 취득하는 장례식장(수익용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금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저금리정책이 가속화·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적정한 운영수익 확보를 위하여 본 법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기금을 처분하고 장례식장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 하고자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예정금액 및 용도, 신축 개요, 대체취득 효과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2/1호
- 30 -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가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상일 : 신축 예정인 장례식장의 인근 주민들이 예전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이영현 : 광교신도시에 인접된 경계 부근인데 아주대학교 뒤쪽으로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예정지 주위로 등산로가 있고 농지로 둘러싸여 있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 사 문길주 : 신축 예정인 장례식장의 규모는 어떤 정도입니까?

의료원장 소의영 : 현재로는 12개 정도의 빈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장례식장의 경우 7개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빈소 가동률은 65% 정도입니다.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정도가 80% 정도이고, 대개 일반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50~60%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큰 빈소의 가동률은 70%가 넘지만 작은 빈소는 30~4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의 구조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광교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장기적인 장례 문화라든지, 인근 수원연화장과 차별화하는 부분, 관련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장례식장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계획 설계 단계라서 추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최대 소요 예산 112.8억원과 연면적 1,827평의 범위 안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것만을 승인하고, 세부적인 건축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위임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주인욱 : 이사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장례식장 신축 한도만을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이사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물로 대체취득 예정인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수정(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수정(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및 장례식장(수익용 건물) 신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은 원(안)과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 이사 이영현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수익용 건물) 신축은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최대 소요예산 112.8억원과 연면적 1,827평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되,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건축내용의 결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내용

1. 매각처분 대상 예금계좌 현황

(단위 : 원)

기관명	만기일	계좌번호	금액	비고
NH농협	'13.12.10	303-0860-1153-71	2,000,000,000	
우체국	'14.01.22	103622-11-018631	1,900,000,000	
기업은행	'14.02.21	336-068956-12-007	4,406,000,000	
우체국	'14.03.20	103622-11-018055	2,500,000,000	
우리은행	'14.04.02	1022-100-151866	2,101,500,000	
			12,907,500,000	

* 상기 계좌 중 장례식장 신축 기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금지급(대체취득) 예정

* 추후 처분대상 예금계좌 만기도록에 따른 재예치시, 변경된 계좌는 다시 처분승인 요청 예정

2.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예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

▶ 처분예정금액 : 11,280,000,000원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장례식장) 대체취득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처분예정금액 변경 가능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08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주 인 육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9인 전원이 주인육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안 재 환

이 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08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3년 10월 11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안재환 안재환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주인욱 주인욱
이사 박상일 박상일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최홍 최홍
이사 김선용 김선용
감사 전성훈 전성훈
감사 배홍기 배홍기